

『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변경에 따라, 조례 제명과 내용을 정비하여 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, 활성화시키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구미시특별농공지구관리조례」에서 「구미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」로 변경,
- 상위법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「경상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」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과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였음(안 제1조)
- 농공단지 공동시설의 범위 신설(안 제2조)
 - 상하수도시설 , 조경시설, 근로자 체육시설, 안전시설, 민방위시설, 수방시설, 유수지(遊水池) 시설, 공공복지후생 시설, 그 밖에 관리기관이 농공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○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치 기준, 구성,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개정
(안 제5조, 7조)

- 협의회 설치 가능한 농공단지 기준 신설

· 농공단지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, 입주기업체수 10개 이상

- 협의회 회원구성 기준 변경

·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 ⇒ 입주기업체 70% 이상이거나

가동 중인 입주기업체 90% 이상

· 협의회 일반회원(입주기업체, 지원기관), 특별회원(일반회원 외)으로 구성

- 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 신설

· 협의회는 매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정기총회 개최, 필요하면
임시총회 개최할 수 있음

· 협의회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,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○ 농공단지 관리보조 범위 변경(안 제12조)

- 예산 및 재정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⇒ 예산 및 재정적립금의 범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
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농공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한, 농공단지 공동시설의 범위 신설과,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치 기준, 구성, 운영 관련 사항 신설 및 개정, 농공단지 관리보조 범위 변경 등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